시세입 및 체납징수 활동 강화

1 기본 현황

□ 사업개요

회 계	일반회계	
사업기간	☑연례반복	
사업내용	○ 지난년도 체납시세 징수를 위해 압축 체납처분을 통해 체납시세를 징수하 실현	
사업비	2,229,018천원 [국비]	[시비]2,229,018천원
(당해년도)	기타 (예산 외) 〔구비〕	(기타)

□ 사업 담당자

실·국	부서명	과 장	팀장	주무관
재무국	38세금징수과	최승대	박희숙	이지연
세구ㅋ	30세급경구과	2133-3450	2133-3452	2133-3456

[※]실국 및 부서명은 예산서 기준으로 작성되어 현재부서와 다를 수 있습니다.

2 예 산 설 명

□ 예산 총괄

□ 에신 공월				(단위 : 천원, %)
구 분	2021예산액 (A)	2022예산액 (B)	증감 (B-A)	
1 1	2021에건국 (A)	2022예산곡 (D)	<u>о</u> н (D-A)	(B-A)*100/A
계	(x-) 1,940,024	(x-) 2,229,018	(x-) 288,994	(x-) 15
사무관리비	(_X -) 5,400	(_X -) 5,400	(x-)	(x-)
기타보상금	(_X -) 5,000	(_X -) 30,000	(x-) 25,000	(x-) 500
포상금	(x-) 1,929,624	(x-) 2,193,618	(x-) 263,994	(x-) 14

□ 산출근거

과목구분	2022년 예산내역		
사무관리비	○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 운영 150,000원*6명*6회	=	5,400천원
기타보상금	○ 은닉재산 신고보상금 30,000,000	=	30,000천원
포상금	○ 시 및 자치구 체납징수분 2,193,618,000	=	2,193,618천원

3 사 업 설 명

□ 사업목적

○ 체납시세 및 세외수입을 징수하는 공무원과 체납자 은닉재산을 신고하여 체납세입을 징수하는데 기여한 시민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체납세입 징수실적 제고

□ 사업근거

- 지방세기본법(제146조)
- 서울특별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

□ 사업내용

- 사업기간 : 2022.1 ~ 12
- 사업의 주요내용 : 포상금 지급대상
 - 지난년도 체납액을 징수한 특별한 공적이 인정되는 공무원
 -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공무원 또는 민간인
 - 체납자 은닉재산을 신고한 특별한 공적이 인정되는 민간인
 - 체납자명의 자동차 번호판 영치를 보조하여 체납액을 징수하는데 기여한 민간인 등

□ 추진경위

○ 체납시세를 징수하여 세입징수에 특별히 기여한 자에게 포상금 지급

□ 2022년도 추진일정

사업추진절차	추진기간	예산집행금액	추진세부내용
계		2,229,018	
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	2022.01~2022.12	2,229,018	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 심의를 통해

(단위: 천원)

_11 ->1		다기ㄱ 기눼	
711.71		포사 스 시해	
/ 14	ll .		

4 사업효과

□ 최근 3년 추진실적

2019년도	○ 2019년도 체납관리 종합 추진계획 수립 및 시행 - 강력한 행정제재로 징수율 제고 및 조세정의 실현 - 상습체납차량 자동차 강제견인 및 공매 실시
2020년도	○ 2020년도 체납관리 종합 추진계획 수립 및 시행 - 강력한 행정제재로 징수율 제고 및 조세정의 실현 - 상습체납차량 자동차 강제견인 및 공매 실시 - 다만, 코로나19에 따른 생계형 번호판 영치 유예
2021년도	○ 2021년도 체납관리 종합 추진계획 수립 및 시행 - 강력한 행정제재로 징수율 제고 및 조세정의 실현 - 상습체납차량 자동차 강제견인 및 공매 실시 - 가상자산 등 신규징수기법을 통한 징수액 증대

□ 향후 기대효과

○ 고액체납자에 대해 재산압류, 압류재산 공매, 고발 등을 통해 강력한 체납처분을 통해 체납시세 징수 추진

5 최 근 3 년 결 산 현 황

(단위 : 천원)

연도	최종예산	전년이월	예산변경	예산현액	집행액	차년이월	집행잔액
2018	(x-) 2,219,432	(x-) 0	(x-) 0	(x-) 2,219,432	(x-) 1,980,832	(x-) 0	(x-) 238,600
2019	(x-) 2,222,482	(x-)	(x-)	(x-) 2,222,482	(x-) 2,051,589	(x-)	(x-) 170,893
2020	(x-) 2,112,482	(X-)	(x-)	(x-) 2,112,482	(x-) 1,712,297	(x-)	(x-) 400,185